

- 답변요지(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어 구 인사부서에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나, 우리 구 실정이 과적차량 단속원등 기능직을 오히려 감축해야 할 실정으로 현 시점에서 기능직 전환은 불가능 함.
  - 질의요지(채재선 위원) : 본 조례안 개정으로 인하여 구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이용주민에 대한 홍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 답변요지(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후 홍보계획을 수립,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임.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 본 폐지조례안 폐지이유 중 새마을이동도서관이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는데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답변요지(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 이동도서관 이용인원, 이용시기, 이용대상 등 그 동안의 이동도서관 재반 운영실태를 검토한 결과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됨.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종사자의 생계대책에 대해서 구에서 확실한 대책이 있는가?
  - 답변요지(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 취업 알선 등 적극적인 생계유지 차원의 배려를 연구 검토하겠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5년12월23일  
제 출 자 : 마 포 구 청 장

##### 1. 폐지이유

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을 그 동안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마포구지회에서 운영해 오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었을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한 주민정서순화 및 문화향상 등 맑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효과적인 사

업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개선 대책에 따라, '96년도부터는 위탁사업을 중단하고, 구에서 직영하고자 우리구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1993.6.1.조례 제223호)를 폐지함

##### 3. 폐지근거

지방자치법(1995.8.4. 법률 제4959호) 제15조

##### 4. 조례(안) : 별첨

##### 5. 예산조치 필요성 : 불필요

####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

##### 심사 보고서

1995. 12. 17

충무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12월23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5년 12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35회 정기회 제11차 위원회('95.12.26)상정, 심사, 보류  
제35회 정기회 제12차 위원회('95.12.27)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가. 개정이유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상에 규정된 용자금액,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용자금 회수방법 등에 있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용자금 운영의 신축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종전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금으로 설치·운용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의용자대상자선정 원칙을 규정(안 제4조)
-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응자 한도액을 소득지원자금은 1천 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5백만 원 이하로 규정(안 제7조)
- 응자금의 상환·상환기한 및 이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내지 제13조)
-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규정(안 제17조)
- 종전의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의 폐지(안 부칙제2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오지(전문위원 박관수)

- 동 조례안은 특별회계로 관리해 오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응자대상자 선정기준, 응자금 체납자에 대한 관리체계의 미흡,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현금취급 등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응자대상자 선정에 있어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으로 구분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은 1천만원 이하,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으로 500만원 이하로 응자한도를 명시하고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응자대상자 등을 결정하도록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 자금은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고 지원금 응자시에는 채권확보 등의 보완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금회수 관리체계를 개선하므로서 원활한 자금회전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등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는 사료되나

-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본 기금은 적정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조례안 중 제4조제2항제2호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를 응자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전세자금은 기동에서 응자를 해주고 있어 이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데?

- 답변요지(김종열 국민운동지원과장): 중복해서 응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제8조제3항에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를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응자 대상자에게 응자를 어렵게 하는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답변요지(김종열 국민운동지원과장): 현재 응자금에 대한 체납액이 50%에 이르고 있어 채권확보를 위해 단서조항으로 담보설정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 질의요지(심재창 위원): 제5조제3항중 금융기관이라 함은 마을금고도 해당이 되는지?

- 답변요지(김종열 국민운동지원과장): 은행 제3조1항에 규정한 금융기관은 시중 은행을 의미함.

- 질의요지(심재창 위원): 마을금고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금고에도 위탁관리할 용의는?

- 답변요지(김종열 국민운동지원과장): 마을금고는 재원이나 자본금에 있어 시중 은행 보다 뒤 멀어지고 마을금고에 위탁을 줄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5년 12월 23일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상에 규정된 응자금액, 응자 대상자 선정기준, 응자금 회수방법 등에 있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응자금 운영의 신축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종전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금으로 설치·운영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응자대상자선정 원칙을 규정(안 제4조)
-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응자 한도액을 소득지원자금은 1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5백만원 이하로 규정(안 제7조)
- 응자금의 상환·상환기한 및 이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내지 제13조)
-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규정(안 제17조)
- 종전의 서울특별시마포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조)

**3.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5.8.4. 법률 제4959호) 제15조, 제35조제1항제5호, 제133조
- 지방재정법(1995.1.5. 법률 제4868호) 제110조
- 지방재정법시행령(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제156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 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응자기금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마포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 또는 그에 따른 응자회수금 등
2. 마포구의 예산에 의한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응자회수금 또는 이자·연체료 등 수익금
4.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 수입

**제4조(응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응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 ②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응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3. 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4.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 제2항 제3호에 의한 학자금 융자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지급기준 전분기)이 인문계 고등학교는 반에서 30퍼센트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반에서 50퍼센트 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학교성적이 80점 이상(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서 등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 관리 하며 소득자금과 안정자금으로 계좌를 구분하여 별도 관리 한다.

② 기금 운용판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은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 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1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대상자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국장,

시민국장, 담당과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과의 담당계장이,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여 위원장을 포함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1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5백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제8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융자금은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등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마포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대상자 결정·통보) ①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에 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여부등을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여부의 결정이 있으면 이를 즉시 당해 대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명단, 대부신청서 및 융자액등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통보한다.

제10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에는 다른 사업등을 위한 자금을 중복하여 융자할 수 없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등)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 1회 균분 상환하되,

- 용자일 전일을 상환기한으로 한다.
- 제12조(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구청장은 제3항에 의한 상환기한 연장 신청이 있으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기한 연장승인의 여부를 결정한다.
- ⑤구청장은 제4항에 의한 상환기한 연장승인의 여부가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상환기한을 연장 하기로 결정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수탁금융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용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정수한다.
- ②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용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상환기한 이후에 있어서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 대출금 및 상환금의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시행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 한다.
- 제15조(지도·감독 및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①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득자금을 용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②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기관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

- 사하게 할 수 있다.
-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감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당해 금융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용자금의 반환·통보)** ①구청장은 용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경우
  -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자금을 용자목적 이외에 사용 하였을 경우
  - 용자를 받은 자가 마포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상환기한전에 용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가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통보를 받은 가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용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에도 용자금을 회수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의 예에 의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1989년7월28일 조례 제92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등) ①종전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 소관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출연금으로 이입 조치 한다.

②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용자된 응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회수된 응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수입으로 조치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  
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5. 12. 28.  
시민보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5.12.11 마포구 청장

나. 회부일자 : 95.12.12

다. 상정일자 : 제35회 정기회 제13차위원회 ('95.12.28)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창수 청소과장)

가. 제안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 과태료의 부과기준등을 보완정비하고 분뇨·정화조청소 수수료의 납부 의무승계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업 신고의 구비서류중 신원증명서 제출의무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업 신고의 구비서

류중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첨부사항 삭제로 민원인의 편의도모(안 제8조제2항 제1호)

○분뇨수입·운반등의 대행업체의 대행기간을 "3년단위"에서 "2년단위"로 단축(안 제9조제3항)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 조항 삭제(안 제14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서식등을 보완정비하여 과태료 처분의 적법성 확보(안 제19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기준등 정비(아 제19조 관련, 별표 4)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동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3.12.27 법률 제4656호) 등의 개정에 따라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의 신설등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기준을 보완정비하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의 대행기간을 3년 단위에서 2년단위로 하여 대행기간을 단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하여 과태료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필요한 부분을 정비보완코자 하는 것임.

○동 조례안에 입법체계상으로 볼 때 <별표 1>"분뇨 자가수집운반업의 신고대상 기준(법 제19조제3항 관련)"은 <별표 1>"분뇨 자가수집운반업의 신고대상 기준(제8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별표 2>분뇨관련 영업 대행계약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내용중 "자본금"은 "자본금 또는 재산"으로 하며, <별표 4>과태료의 부과 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은 "<별표 4>과태료의 부과 기준(제19조제4항 관련)"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자 과태료징수율이 낮은데 조례를